

부산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2가단3114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21.

판 결 선 고 2022. 9. 15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. 6.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. 1. 6. 접수 제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을 1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원고의 채무자 C이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. 6.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나, 당심 계속 중인 2022. 6. 9.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(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다215763, 215770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되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우철

별지